

감사위원회 규정

2024. 7. 26

기아 주식회사

제 1 장 목 적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무)

- (1)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2)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회사에 경영상 중요정보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고, 불응 시 위원회에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26)
- (4)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9.04.25)
- (5)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2 장 구 성

제4조 (구 성)

- (1)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상법 등 관련법률이 정한 의결방법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에 의하여 선임한다.
- (2)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3)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4)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 사망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해임)

위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상법 등 관련법률이 정한 의결방법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에 의하여 해임한다.

제6조 (임 기)

위원회 위원 임기는 당해위원의 이사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장)

- (1) 위원회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3)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8조 (종 류)

- (1)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2) 정기위원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 (3)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 (소집권자)

-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소집절차)

- (1) 위원회 소집통보는 회의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개최시기, 장소 및 안건을 기재하여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4)
- (2)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11조 (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감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4.25)

제12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①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②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①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②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③ 이사에 대한 유지청구
 - ④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⑤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 ① 업무, 재산 조사

- ② 자회사의 조사
- ③ 이사의 보고 수령
- ④ 이사와 회사간의 소 대표
- ⑤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 ⑥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개정 2019.04.25)
- ⑦ 감사계획 및 결과
- ⑧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⑨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 ⑩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⑪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⑫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 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 ⑭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제13조 (관계인의 출석 등)

- (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의사록)

-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 장 보 칙

제15조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 (1)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 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25)

제16조 (상근 위원의 활동)

- (1)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회 위원은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총괄 수행하도록 한다.
- (2) 위원회의 감사업무 중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합의하에 상근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 추인받을 수 있다.

제17조 (부속기구의 설치)

- (1) 위원회는 회사의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부속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부속기구의 장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고 부속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한다.

제18조 (감사록의 작성)

- (1)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9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20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신설 2019.04.25)

- (1)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목이 위원회의 평가보고서임을 기술

2. 수신인이 주주 및 이사회임을 기술
3. 평가기준일에 평가대상기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의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4. 경영진이 선택한 내부통제체계와 이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위원회는 관리감독책임이 있다는 사실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추가적인 검토절차를 수행한 경우 해당 사실
6.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
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 내용
8.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평가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기준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10.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기준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론
11.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설명
12.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또는 이미 수행중인 절차
13. 보고서 일자
14. 감사위원의 서명 날인
15. 기타
 - 가. 대표이사의 보고내용 요약(평가 결론, 유의한 미비점, 시정조치 및 향후 계획 등)
 - 나. 평가 결과 추가적으로 발견된 사항
 - 다. 권고사항

제21조 (간사) (신설 2019.10.24)

- (1)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
- (2)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024년 7월 26일

기아 주식회사